

15.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558호 1997. 12.31

주요 골자

- 가. 보육시설이 구입하는 보육용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보육용품임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서류의 발급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종교의식용 피아노에 대한 사실증명서류의 발급기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령 제30조제2항).
- 나. 배기량이 800cc이하인 경승용차 전용의 카에어컨 부분품인 압축기·의축기·증발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별표1).
- 다. 관광산업의 육성과 외화획득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별표 2).

개정 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1997. 12. 13, 법률 제5425호)되어 보육시설이 구입하는 보육용품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게됨에 따라 보육용품의 확인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과세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잠정세율 적용물품) 법 제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은 별표 1 제2종제3호나목의 물품중 종합유선방송텔레비전용 컨버터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중 “면제를”을 “감면을”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의2중 “종교의식용의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보육시설보육용 및 종교의식용의 것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가. 법 제18호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나. 법 제1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

다.)

별표 1 제1종제1호중 “전자유기장”을 “컴퓨터게임장”으로 하고, 동표 제1종제5호나목중 “증발기”를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이며 폭이 1.5미터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카지노.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의 카지노로서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입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회보